

의 안 번 호	1808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 일자 : 2021. 8. 24.(화)
- 나. 제출 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8. 20.(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9. 7.(화)

2. 제안설명 요지(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떨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의 달과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 및 격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
 - 보훈의 달과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위문금품 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본어식 표현 정비 등

다. 근거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경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의 달과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훈·문화 행사등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도 고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고(검토내용) : 제5조제7호의 기부금품 제공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p.62

○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9)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순국선열의 날·설·추석에 농수산상품권·생활용품 등의 위문금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따라 가능함.

기초자치단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위문금품 지급 관련
서울 도봉구	제4조의2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보훈의 달, 보훈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원
서울 서초구	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
서울 종로구	제15조	사망위로금 등 지급	구청장은 설날,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1명당 5만원 이내의 위문금품을 지급
광주 서구	제14조	위문금품 등의 지급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을 지급
강원 정선군	제9조	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
강원 평창군	제8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
경북 경산시	제7조	공훈선양 사업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와 설, 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 격려
경북 구미시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와 설, 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 격려
경북 안동	제6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보훈관련 행사 또는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
전북 군산시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 격려

광역시자치단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위문금품 지급 관련
울산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
부산	제4조	예우 및 지원	없음
대구	제3조	예우 및 지원	없음
인천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광주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대전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세종	제4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없음
경기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강원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충북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없음
충남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전북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전남	제8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경북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없음
경남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 관련 기념일.계기행사 시 위문